

공연 관객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 좌석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2024. 1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안전지원센터

CONTENTS

1. 공연 주최자	3
2.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	6
3. 관할 시·군·구 담당자	8
[부록 A] 스탠딩 공연 수용인원 산출 예시	9
[부록 B] 비상 시 현장 대응 조치 가이드(압사 사고 관련)	12
[부록 C] 대관 운영 규정을 통한 안전 확보 방안	13
[부록 D] 공연법에 따른 재해예방조치	16
[부록 E] 안전거리 설정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례	17

본 자료는 스탠딩 공연 등 좌석이 정해지지 않은 공연에서 공연 주최자,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 관할 지자체가 관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로서 법적 의무나 강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정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공연의 특성과 시설 및 장소의 운영 및 환경 상황에 맞게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연 주최자

단계	구분	점검 사항	확인
공연 준비	[A] 공연시설 및 장소 적정성 ¹⁾	a) 예상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인가?	
		- 시설 및 장소의 총 수용인원을 확인하였는가? [부록 A 참고] * 시설 및 장소 관리자가 총 수용인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공연 주최자와 시설 및 장소 관리자가 협의하여 적정한 총 수용인원을 확인해야 함	
		- 시설 및 장소의 총 수용인원 산정 시, 출구와 계단의 유효너비를 고려하였는가? [부록 A 참고] * 시설 및 장소 관리자가 총 수용인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공연 주최자와 시설 및 장소 관리자가 공동으로 출구와 계단의 유효너비를 고려하여 총 수용인원을 산정해야 함	
		- 객석 구역의 관람 인원 산정이 적절한가? [부록 A 참고] * 시설 및 장소의 총 수용인원 > (관람 예상인원 + 공연자, 진행 및 경비 인력, 무대기술 인력 등을 모두 포함한 인원)	
		b) 공연시설 및 장소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였는가?	
		- 공연시설 및 장소에 관객의 이동을 제한할 장애물 또는 위험구역은 없는가?	
		- 폭염 또는 한파에 대한 대응 방안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 * 식수, 냉방, 난방 등	
		- 장소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과 물품*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에 따른 소방시설,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	
	[B] 군중 안전관리 계획 수립	a) 스탠딩 공연 시 인파 쏠림 및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한 분리 구획 설정	
		- 스탠딩 객석 구역 및 구획된 공간 사이에 안전관리 인력 이동 또는 응급환자 이송이 원활하도록 통로가 조성되어 있는가?	
		- 분리 구획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통제설비(바리케이드, 안전펜스 등)*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가? * 무대 앞쪽의 경우에는 전용 바리케이드 설치, 이동 경로를 통제·관리하기 위해 서는 안전펜스 설치 권장	
		- 분리 구획에 통제설비를 적용할 경우, 구획된 공간으로 출입할 수 있는 간이 출입구가 무대 측을 향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는가?	
		- 분리 구획 간 관객 이동을 통제·관리하기 위해 구획 경계별 안전요원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스탠딩 객석 구역 및 분리 구획 내에 관객관리 안전인력을 배치하여, 구역 내에서 관객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가?	
		- 스탠딩 객석 구역에 어린이의 입장 제한 조치를 하였는가? * 어린이의 경우 키가 작아 밀림, 넘어짐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주변 사람들과 안전요원 등이 위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단계	구분	점검 사항	확인
		b) 무대 앞쪽에서의 관객 몰림 관련 사항	
		- 무대 앞쪽의 관객 몰림에 대한 통제설비가 적정한가?	
		- 무대와 객석 1열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였는가? * 무대 특수효과 장치 안전구역, 안전관리 인력 이동 통로, 기타 구조물(스피커, 콘솔, 가벽)로부터의 안전거리 등을 고려 [부록 E 참고]	
		- 무대 전면 등 관객 난입이 가능한 구역에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인력*을 배치하였는가? *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실무 경험이 많은 자 등	
		- 공연을 위한 설치물 등이 스탠딩 객석 구역의 관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방해하지 않았는가? * CCTV, 스탠딩 구역 직접 관찰 체계 등	
		c) 공연시설 및 장소 내에서 타 구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 공연 공간이 분리된 경우, 공연 공간 사이의 이동과 쏠림에 대비한 안전계획이 있는가? * 각 공간별 수용인원 관리계획, 이동을 관리할 안전관리 인력 배치, 계단 이동 시 관객 분산 대책 등	
		- 관객 이동 경로 외 별도의 피난 경로를 확보하였는가? 만약,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 이동 경로와 분리할 사용계획은 있는가?	
	[C] 비상 대응계획 수립	a) 비상 대응계획 수립 관련 사항	
		- 군중 혼잡 사고 대비 및 대처, 관객 피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비상시 원활한 관객 피난을 위해, 비상 방송 장치, 확성기 등 비상 안내 장치를 사용하여 상황 전달 및 피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가?	
		- 응급환자 대처계획을 수립하였는가?(구급차량 · 구급인력 · 응급진료소 · AED 등 배치, 인근 병원 환자 이송 계획, 환자 이송 동선 등)	
		- 응급차량 및 구조대원 진입 경로 확보 등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 집결지를 선정하였는가?	
	[D] 재해대처계획 작성 및 신고	a) 재해대처계획 작성 및 신고 관련 사항	
		- 1천명 이상의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필수항목이 빠짐없이 적절하게 포함되었는가? [부록 D 참고]	
		- 공연시설 및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재해대처계획을 공연 개시 14일 전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였는가?	
		- 대규모 공연 행사, 불특정 다수 대상 무료 공연 관람 등 군중 혼잡이 예상될 경우, 관내 경찰 및 소방 인력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와 협의하여 관할 시군구에 요청하였는가?	
공연 시설 및 장소 사용	[E] 재해대처계획 실천	a) 재해대처계획 실천 관련 사항	
		-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 상황(총소리, 폭약, 불꽃 등),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전에 공지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는가?	

단계	구분	점검 사항	확인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공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고 있는가?	
		- 안전관리조직 업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	
	[F] 관객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	a) 관객 안전관리 인력 배치 [부록 E 참고]	
		- 'B. 군중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관객 안전관리인력이 지정된 구역에 배치되었는가?	
		- 공연시설 및 장소 출입구별* 관객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입·퇴장에 따른 안전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가? * 관객 이동동선, 출구, 구획분리구역 경계, 무대 전면 인파 집중 밀집예상구역 등	
		- 관객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구역*에 관객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가? * 가파른 계단, 난간대, 절개지, 바닥하중 취약 구역, 에스컬레이터 등	
		b) 관객 안전관리 인력 교육 및 비상 연락망 공유 등	
		- 화재 안전 절차, 비상시 피난 절차, 압사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의 상황 처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하였는가?	
		- 공연 안전관리조직, 협조기관 등의 비상 연락망을 공유하고, 비상 시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 체계(무전기, SNS 등)를 갖추었는가?	
		- 확성기, 호루라기, 경광등 등 관객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안전관리 인력으로 구분될 수 있는 복장을 갖추었는가?	
	[G] 관객 안전 확보 조치	a) 관객 입·퇴장 전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 스탠딩 객석 구역에 이상 돌출부, 바닥 불균일, 바닥 미끄럼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는가?	
		- 바리케이드, 안전펜스 등 통제설비가 견고하게 고정되었는가?	
		- 구역별로 출입구를 지정하여 관객이 안전하게 분산 퇴장하도록 계획되었는가?	
		- 모든 객석 구역에서 피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난 경로에 대한 식별 표시(피난구 위치 및 피난경로 화살표 등)가 적합한가?	
		- 주차 및 교통 안내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 적정 주차장(대형버스·승용차 등) 확보 및 주차불가 안내, 인근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안내요원 배치 등	
		b) 관객 입·퇴장 중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 공연 계획에 맞춰 정해진 시간과 구역에서 관객 입·퇴장이 이뤄지고 있는가?	
		- 전체 관객 규모를 고려해 입구별 분산 입장, 입장 대기열 관리를 위한 대기동선 확보 등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객 입·퇴장 중 군중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력 또는 장비가 배치되어 있는가?	

- 1) 공연시설 및 장소 적정성은 공연 주최자와 시설 및 장소 관리자가 공연정보와 공간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는 공연시설 및 장소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해당 시설 및 장소의 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계	구분	점검 사항	확인
일상 운영	[A] 시설 및 장소 안전 정보 제공	a) 공연시설 및 장소의 수용인원 적정성	
		- 시설 및 장소의 총 수용인원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 [부록 A참고]	
		- 시설 및 장소의 총 수용인원 산정 시, 출구와 계단의 유효너비를 고려하였는가? [부록 A 참고]	
		b) 시설물 사용 안전 규정 및 주요 설비에 관한 정보제공 등	
		- 시설 및 장소의 수용인원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안내되고 있는가?	
		-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 및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되고 있는가?	
		- 시설 및 장소의 피난구조설비 및 피난 경로에 대한 정보가 눈에 잘 띄게 게시되어 있거나 방송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는가?	
		- 공연시설 및 장소 사용자가 수용인원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대관 규정 등 자체 안전규정을 마련하였는가?	
	[B] 시설 및 장소 점검/관리	a) 시설 및 장소의 점검·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상 용도에 맞게 해당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가 관리되고 있는가? * 관련 규정 : 건축물 관리법 제12조	
		- 화재예방법 상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해당하는 경우는 공연장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작성, 화기취급의 감독 등)를 수행하고 있는가? * 관련 규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그 점검 결과를 관리하고 있는가? * 관련 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시설 및 장소의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 취약 요인을 개선하였는가?	
공연 준비	[C] 공연 전 시설 점검	a) 공연 주최자 등 공연시설 및 장소 사용자와 공연 전 합동 점검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 등) 및 응급 장비의 수량 및 상태가 적정한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참고	
		- 피난설비(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등)가 정상 작동하고 있으며, 가려지지 않았는가?	
		- 피난 경로에 물건, 장애물 등을 설치 또는 적치하거나, 폐쇄 또는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가?	
		- 객석 구역 내 위험요인 및 관객 출입 제한 구역의 통제 조치가 적정한가?	

단계	구분	점검 사항	확인
	[D]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및 재해대처계획 검토	a) 비상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시설 및 장소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정보와 비상 시 협조 기관 연락처 정보*를 공연 주최자에게 전달하였는가? *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담당자, 인근 병원 등	
		- 위험 상황 발생 시, 공연 중지 또는 중단 결정, 관객 대피 명령 등을 위한 연락망과 의사결정체계가 분명한가?	
		- 공연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및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b) 재해대처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 공연 주최자와 공동으로 재해대처계획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공연 시설 및 장소 사용 ³⁾	[E] 자체 안전 규정 준수 여부 점검	a) 자체 안전규정 준수 및 안전 관련 법령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 공연시설 및 장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자체 안전규정이 공연 현장에 올바르게 적용·관리되고 있는가?	
		- 시설 및 장소 구역별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입장하지 않도록 입장 인원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초과 시 입장을 제한하고 있는가?	
		- 시설 및 장소 구역별 바닥 허용 하중을 초과하는 인원수용 및 장비류의 반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가?	
		- 관객 입장 전 '[C] 공연 전 시설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 시설 작동 및 기능 등에 이상이 없는지 최종 점검하였는가?	
	[F] 관객 입·퇴장 모니터링	a) 관객 입·퇴장 시 안전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공연시설 및 장소 대관 신청서의 공연 계획에 맞춰 정해진 시간과 구역에서 관객 입·퇴장이 이뤄지고 있는가?	
		- 관객 입·퇴장 중 군중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3) 공연시설 및 장소 사용 중에는 시설 및 장소 관리자가 공연 주최자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며 체크리스트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관할 시·군·구 담당자

단계	구분	점검 사항	확인
공연 준비	[A] 재해대처계획 점검	a) 재해대처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	
		- 예상되는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인 공연에 대해 재해대처계획을 공연 개시 14일 전에 신고받았는가?(등록된 공연장이 아닌 경우)	
		- 「공연법」에 따른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가? [부록 D 참고]	
		b) 스탠딩 객석 구역의 수용인원 및 관리 대책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의 정보에 따라 관람 예상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 및 장소인가? [부록 A 참고] * 시설 및 장소의 총 수용인원 > (관람 예상인원 + 공연자, 진행 및 경비 인력, 무대기술 인력 등을 모두 포함한 인원)	
		-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배치에 관한 계획*이 적정한가? * 관객 입·퇴장 출입구에 안전관리 인력 배치(경호원 등 전문인력 여부 등) * 스탠딩 객석 구역 내 안전관리 인력 배치(경호원 등 전문인력 여부 등) * 공연 관람 구역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인력 배치 * 위험구역(가파른 계단, 난간대, 절개지, 바닥하중 취약 구역, 에스컬레이터 등)에 대한 안전관리인력 배치	
		c) 유관기관 통보 및 지원 필요성 검토에 관한 사항	
		- 재해대처계획 신고 내용을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였는가?(「공연법」 제11조제1항) - 재해대처계획 신고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였는가?(권장사항)	
		- 공연주최자가 관내 경찰 및 소방 인력 등의 배치를 요청하는 경우, 그 필요성에 따라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는가?	
		d) 재해대처계획 검토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내용이 미흡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였는가?	
공연 시설 및 장소 사용	[B] 현장 점검 (권장)	a) '[A] 재해대처계획 점검'에 따라 현장 점검이 요구되는 경우	
		- 현장 점검 시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적합하며,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가 이뤄지고 있는가?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피난안내,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배치 등	
	[C] 이상징후 정보 수집 및 전파 연락체계	a) 주변 이상징후 정보 수집 및 전파 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공연 종료 후	[D] 안전 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 공연시설 및 장소 인근의 이상징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연락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소방서, 경찰서 등)	
		- 공연시설 및 장소 인근에서 재해, 대형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공연에 위험이 가해질 경우, 이를 공연 주최자 또는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는 연락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공연 종료 후	[D] 안전 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a)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에 관한 사항	
		-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공연이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자로부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았으며, 사용 금액 및 용도가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하였는가?	

1 시설 및 장소 총 수용인원 산출 관련 자료

자료 출처	발행 기관	면적 기준 총 수용인원
NFPA 101	미국 NFPA (Th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1인 0.46 m ² 를 할당하도록 권장(일반적으로 서서 보는 관람 구역 기준)
IFC section 1004 (Table 1004.5)	미국 IFC (International Fire Code)	- 스탠딩 공간의 1인 점유 면적은 2 ft ² (0.4645 m ²)로 함
Technical Standards for Entertainment Places	영국 극장 기술인협회(ABTT)	- Bar, Hall 또는 좌석이 없는 구역, 스탠딩 관중용 뮤직 및 유사 문화 공간의 객석 당 허용 공간 계수 0.45 m ²

2 좌석이 없는 스탠딩 객석 구역에서의 입석 관람 인원 관련 자료

자료 출처	발행 기관	면적 기준 입석 관람 인원
ESG (Event Safety Guide)	미국 ESA (Event Safety Alliance)	- 1인 점유 면적이 0.46 m ² 이하 : 보행자의 움직임이 매우 제한됨 - 1인 점유 면적이 0.2787 m ² 인 경우 : 의도치 않은 접촉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됨 - 1인 점유 면적이 0.1858 m ² 인 경우 : 여러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음

3 출구의 유효너비 관련 자료

자료 출처	발행 기관	출구 너비 적용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 -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IFC section 1005**	미국 IFC (International Fire Code)	- 출구(계단)의 너비 산출 : (7.6 mm / 1명) 이상으로 계산 [단,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5.1 mm / 1명)으로 적용 가능] - 출구(평지)의 너비 산출 : (5.1 mm / 1명) 이상으로 계산 [단,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3.8 mm / 1명)으로 적용 가능]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관람실”의 정의가 스탠딩 객석 구역(입석)에 특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 출구의 유효너비 관련 해외 규정(IFC)에서는 바닥면적이 아닌 수용인원 기준으로 그 출구의 너비를 정하고 있으므로, 시설물 총 수용인원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함

4 총 수용인원 및 스탠딩 객석 구역 관람인원 산출 시 고려 사항

- 실내 시설물에서의 총 수용인원은 격벽이 있는 거실 바닥면적에 따라, 관련 해외규정(NFPA 101, IFC section 1004)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권장함. (특히 IFC의 경우에는 총 수용인원에 따른 출구의 너비 기준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 다만, 실내 시설물의 건축구조(출구 형태, 출구 너비, 경로 등)에 따라 비상 대피 시간이 다르므로, 위의 해외 규정을 참고하되 비상시 대피 시간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총 수용인원을 검토 및 보완하는 것을 권장함.
- 실내 시설물에서의 스탠딩 객석 구역은 그 시설물의 일부 구역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스탠딩 객석 구역 내부에서의 관람객 1인당 점유 면적은 시설물의 총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되, 관람객 1인당 점유 면적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 군중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권장함.

*관람객 점유 면적에 따른 위험도 참고 : ESG(Event Safety Guide)

- 별도의 출구가 없는 실외 공연 장소일 경우에는 총 수용인원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없으므로, 스탠딩 객석 구역의 관람객 1인당 점유 면적에 관한 사항만 고려하여 검토 가능

5 수용인원 산출 예시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람실”의 바닥면적으로만 그 유효너비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규정에서의 “관람실”이 “스탠딩(입석)”에 특정하지 않기에, “스탠딩(입석)”을 고려한 수용인원 산출 조건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해외 규정에서는 바닥면적이 아닌 수용인원으로 출구의 너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원활한 관객 입·퇴장 운영 및 비상시 안전한 대피 등을 위해 해외 규정(국제소방코드 IFC)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총 수용인원을 산출하는 것을 권장함
- 총 수용인원 산출 예시에 따라, 시설물의 출구 너비로 인하여 총 수용인원이 한정되는 경우, 건축물 구조 및 소방시설 개선 조치를 통해 면적당 최대 수용인원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함

1) 실내 건축시설의 총 수용인원 산출 예시

조건 예시	-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실내 건축물에서의 공연 - 실내 시설물의 바닥 면적은 1,000 m²로 가정 - 1인 점유 면적을 0.46 m² 적용 시 (NFPA 101, IFC section 1004 준용)
출구 유효너비 적용 기준	- 출구(계단)의 너비 산출 : (7.6 mm / 1명) 이상으로 계산 [단,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5.1 mm / 1명)으로 적용 가능] - 출구(평지)의 너비 산출 : (5.1 mm / 1명) 이상으로 계산 [단, 자동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3.8 mm / 1명)으로 적용 가능]
수용인원 검토	① 면적당 수용인원 : 2,173명 (단, 아래의 출구 형태와 자동 스프링클러 및 비상 안내·경보장치 설치 유·무에 따른 출구 너비 합계 이상이어야 함) - 면적당 수용인원 산출 : $1,000 \text{ m}^2 \times (1\text{인} / 0.46 \text{ m}^2) = 2,173\text{명}$ ② “①”에서 산출된 면적당 수용인원인 2,173명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출구가 “계단” 형태일 경우, 출구 너비 합계가 11.08 m*가 되어야 함 (단, 자동 스프링클러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없는 경우의 출구 너비 합계는 16.51 m**로 적용) *$2,173\text{명} \times (0.0051 \text{ m} / 1\text{명}) = 11.08 \text{ m}$ **$2,173\text{명} \times (0.0076 \text{ m} / 1\text{명}) = 16.51 \text{ m}$

	- 출구가 “평지” 형태일 경우, 출구 너비 합계가 8.26 m*가 되어야 함 (단, 자동 스프링클러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없는 경우의 출구 너비 합계는 11.08 m**로 적용) *2,173명 × (0.0038 m / 1명) = 8.26 m **2,173명 × (0.0051 m / 1명) = 11.08 m ③ 출구 형태와 자동 스프링클러 및 비상 안내·경보 장치 설치 유·무에 따른 출구 너비가 “②”의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실제 출구 너비 합계에 따라 최대 수용인원 제한 검토가 필요함 - (예시1) 계단 형태의 출구 너비 합계가 5 m이며, 자동 스프링클러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없는 경우 : 5 m ÷ (0.0076 m / 1명) = 657명(소수점 이하 삭제) - (예시2) 평지 형태의 출구 너비 합계가 5 m이며, 자동 스프링클러와 비상 안내·경보 장치가 있는 경우 : 5 m ÷ (0.0038 m / 1명) = 1,315명(소수점 이하 삭제)
--	---

2) 좌석이 없는 스탠딩 객석 구역의 관람 인원 산출 예시

조건 예시	-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실내 건축물에서의 공연 - 실내 시설물의 바닥 면적은 1,000 m²로 가정 - 실내 시설물 중 스탠딩 객석 구역의 면적이 500 m²로 가정
스탠딩 객석 구역 관람 인원 적용 기준	※ ESG(Event Safety Guide) 참고 - 1인 점유 면적이 0.46 m² 이하 : 보행자의 움직임이 매우 제한됨 - 1인 점유 면적이 0.2787 m²인 경우 : 의도치 않은 접촉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됨 - 1인 점유 면적이 0.1858 m²인 경우 : 여러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음
수용인원 검토	① 위의 조건 예시에 따라 스탠딩 객석 구역 관람 인원 산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면적당 수용인원 0.46 m² 적용 시 : 500 m² × (1명 / 0.5 m²) = 1,087명 - 면적당 수용인원 0.2787 m² 적용 시 : 500 m² × (1명 / 0.2787 m²) = 1,794명 - 면적당 수용인원 0.1858 m² 적용 시 : 500 m² × (1명 / 0.1858 m²) = 2,691명 ② “1) 실내 건축 시설의 총 수용인원 산출 예시”에 따라, 실내 시설물의 총 수용인원이 2,173명일 경우, 스탠딩 객석 구역의 관람 인원과 그 외 공연시설을 사용하는 관계자와 좌석 관객의 합계가 2,173명 미만이어야 함. - “①”의 면적당 수용인원 0.2787 m²에 따른 1,794명은 허용 가능(단, 그 외 인원을 포함한 전체 인원이 시설물 총 수용인원 미만일 경우) - “①”의 면적당 수용인원 0.1858 m²에 따른 2,691명은 허용 불가(시설물 총 수용인원 초과) ③ 단, 스탠딩 객석 공간의 1인 점유 면적이 낮으면, 해당 공간에서의 군중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훈련된 전문 관객 안전관리인력 배치와 군중 통제 대책 강화 등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 예시는 국내외 관련 자료에 따라 작성된 참고자료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개별 공연의 특성과 시설 및 장소의 운영 및 환경 상황, 안전 계획 및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실제 공연에서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 m²당 4명의 수용인원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1 군중 혼잡 발생 시

- 공연 중 군중 혼잡 발생 : 공연 관계자는 공연 중지 후, 출연진에게 군중 혼잡에 의한 중단임을 밝히고, 공연 음향 시스템과 관객 안전관리인력으로 혼잡 상황을 수습하여야 한다.
- 공연 입·퇴장 시 군중 혼잡 발생 : 시설물 비상 방송시스템, 휴대용 확성기 등을 통해 혼잡 상황 발생을 모든 관객에게 안내하고, 모든 관람객의 이동을 멈추도록 지시 후, 혼잡 구역의 군중 관리 및 통제 조치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군중 혼잡으로 인한 압사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모든 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의 관객 행동 요령을 전파하여야 한다.

※ 공연 중 스탠딩 객석 구역에서의 압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사항 전파

(1단계) 공연 중지 후 압사 사고 발생 위험 안내

(2단계) 앞 사람을 밀지 않고, 양팔로 가슴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하며, 넘어졌을 땐 몸을 옆으로 웅크리도록 안내

(3단계) 군중 이동이 멈추면 서서히 뒤로 한 보씩 이동 안내

※ 공연 입·퇴장 등 이동 시 압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사항 전파

(1단계) 압사 사고 발생 위험으로 이동 중지 안내

(2단계) 앞 사람을 밀지 않고, 양팔로 가슴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하며, 넘어졌을 땐 몸을 옆으로 웅크리도록 안내

(3단계) 관객 밀집 구역의 군중 관리 및 통제 조치(혼잡 상황 정리)

- 군중 혼잡 상황이 정리되더라도 시설 및 환경 특성에 의해 재발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중 혼잡 발생 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하며, 군중 혼잡이 지속되거나 악화하여 압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전체 공연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압사 사고 환자 발생 시

- 스피커 등 확성기를 활용하여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든 관객에게 알리고 군중 이동을 멈추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압사 사고 구역까지 관객 안전관리인력이 접근하여 응급환자 이송 또는 현장 응급조치를 위해 주변 관객 이동 지시 및 통제 조치하여야 한다.
- 압사 사고 구역이 평지가 아닐 경우, 환자를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평지로 이송 조치
-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시설일 경우, 자동심장충격기를 응급조치 구역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환자의 의식 및 호흡 상태를 확인하면서 응급조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119 전화 연결과 동시에 실시하며, 119 전화 연결 성공 후 응급환자 조치를 위한 의료 지도를 받으면서 응급조치 시행 필요)
-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경우, 2인 1조로 심폐소생술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응급조치하여야 한다.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가 공연 안전을 위해 공연 주최자에게 요구해야 하는 사항은 자체 대관 운영 규정 등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며,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는 공연 현장에서 공연 대관 규정이 올바르게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여,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대관 운영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

구분	내용
대관 승인의 거절 및 취소	시설 및 장소 운영자는 공연 주최자가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을 거절 및 취소할 수 있음
시설 및 장소 사용의 제한	- 시설 및 장소 운영자는 공연 주최자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사용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음 - 관련 법령(공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대관운영규정의 안전 요구사항 및 재해대처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선착순 입장, 수용인원 초과 등 관객 혼잡에 의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 폭설,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재해대처계획 신고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경우 시설 및 장소 운영자와 공연 주최자가 공동으로 관할지자체에 공연 개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함 - 공연 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예. 공연 개최 20일 전까지) 시설 및 장소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설 및 장소 운영자의 검토 결과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관할지자체에 14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공연 전 안전점검	- 공연 주최자는 시설 및 장소 운영자와 공연전 아래의 사항에 대해 합동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소화설비 및 응급장비의 상태 점검 - 피난설비(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등)의 상태 점검 - 수용인원 대비 피난 경로 확보 상태 점검 - 객석 구역 내 위험요인 및 관객 출입 제한 구역 점검 - 응급실, 응급조치인력 및 응급차량 등의 배치 계획 점검 - 공연 주최자는 합동 사전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파악된 경우, 시설 및 장소 운영자와 협의하여 공연 전까지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관객 안전 관리	- 공연 주최자는 재해대처계획에 수립한 수용인원 및 군중관리 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객 입장부터 퇴장까지 관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함 - 공연 주최자는 관객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을 실시하여야 함

2 대관 운영 규정 예시

※ 참고

대관 운영 규정 예시는 관객 안전 관리 분야에 필요한 주요 내용만을 다룬 것이므로, 공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추가 사항(시설물 안전 관리, 특수효과 안전 등)은 별도의 자료 조사 등을 통해 내부 운영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을 권장한다.

■ 대관 승인의 거절 및 취소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는 대관신청·승인된 공연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대관승인을 거절하거나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관운영규정의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기한 내에 재해대처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 및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시설 및 장소 사용의 제한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는 승인된 공연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시설 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관련 법령(공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대관운영규정의 안전 요구사항 및 재해대처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 선착순 입장, 수용인원 초과 등 관객 혼잡에 의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4. 폭설,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 재해대처계획

- ① 대관 사용자는 공연 개최 ○○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출한 재해대처계획서는 관련 법령 및 대관운영규정의 안전 요구사항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는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대관 사용자는 재해대처계획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재해대처계획서를 보완하여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에게 제출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대관 사용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공연 개최 14일 전까지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공연 전 안전점검

- ① 대관 사용자는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와 함께 아래의 사항에 대해 공연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관 사용자는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의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소화설비 및 응급장비의 상태 점검
2. 피난설비(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등)의 상태 점검

3. 수용인원 대비 피난 경로 확보 상태 점검

4. 객석 구역 내 위험요인 및 관객 출입 제한 구역 점검

5. 응급실, 응급조치인력 및 응급차량 등의 배치 계획 점검

6. 기타 안전 취약 및 위험요인 점검

- ② 대관 사용자는 공연 전 안전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파악된 경우, ○○○○(시설 및 장소 관리 주체)와 협의하여 공연 전까지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관객 안전 관리

- ① 대관 사용자는 재해대처계획에 수립한 관객의 수용인원 및 군중관리계획을 준수하고 관객 입장부터 퇴장까지 관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② 대관 사용자는 관객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비상 상황 대응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해대처계획 작성 항목(「공연법」 제11조, 「공연법 시행령」 제9조)

- 공연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공연법」 제11조의2), 안전관리조직(「공연법」 제11조의3), 안전교육(「공연법」 제11조의4),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공연법」 제11조의5)
-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 계획 및 공연계획서(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경우)

2 안전관리조직 구성(「공연법」 제11조의3,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

- 공연장에서의 안전관리조직 구성
 - ▶ 객석 수 500석 이상 ~ 1,000석 미만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 객석 수 1,000석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 공연장 외 공연에서의 안전관리조직 구성
 - ▶ 예상관객 수 1,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
 - ▶ 예상관객 수 3,000명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2명 이상

1 무대와 객석 1열 사이의 안전거리

- A사 : 2미터 이상
- B사 : 화약 사용 시 불꽃 높이가 6~8미터인 경우 안전거리 5미터
화약 사용 시 불꽃 높이가 4~6미터인 경우 안전거리 3미터

2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 A사 : 관객 1만명 기준 안전관리요원 150명 배치
- B사 : 관객 1만명 기준 안전관리요원 200명 배치

※ 공연의 특성과 시설 및 장소의 운영 및 환경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